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고령군의회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김 기 창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경고·사과의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하여 의원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출자·
출연기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는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감액하던

종전 제7조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추가하여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여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도모하였습니다.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의 [별표1]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0. 5.

발 의 자 : 김기창·이철호·유희순 ·
김명국·성원환·성낙철

1. 제안이유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하여
의원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2. 주요내용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감액하던
중전의 제재에 추가하여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여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도모 (안제7조 2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회법」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
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u>경우에는</u>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서 신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우</u> ----- ----- -----</p> <p>--. <u>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u></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p>2. <u>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신 설>

<신 설>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0. .

발 의 자 : 김기창·이철호·유희순 ·

김명국·성원환·성낙철

1. 제안이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별표1 1호)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별표1 3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군조례 제 호

고령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0. .

발 의 자 : 김기창·이철호·유희순 ·
김명국·성원환·성낙철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3조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3조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고령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u></p> <p>3.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163조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u></p> <p>3. (현행과 같음)</p> <p>4.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p> <p>② (현행과 같음)</p>